

19세기말 서구식 대례복 제도에 대한 조선의 최초 시각 -서계(書契) 접수 문제를 통해-

이 경 미[†]

서울대학교 박물관

The First Perspective on Western-style Court Costumes in the Late 19th Century of Joseon Dynasty -Through the Problems Receiving the New Styled Credential-

Kyung-Mee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접수일(2008년 12월 29일), 수정일(2009년 3월 31일), 게재확정일(2009년 4월 2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Joseon dynasty's first perspective on the Western-style Court Costume which was newly introduced to Joseon through the problems receiving the credential that Japan had sent in new style. For this study, the records of Joseon and Japan at that period have been analyzed.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a critical argument on the Western-style Court Costume occurred just before the Port Opening because whether wearing a western costume was the key factor in Joseon dynasty's receiving the credential that Japan had send in new style. Second, Japan received western costume as its domestic courtesy system by establishing the Court Costume of Civil servants in 1872 and consequently Japan established new ceremony procedure of western-style bow in 1875. Third, Joseon dynasty officially opposed to the Western-style Court Costume when Japan sent the credential, because the western costume selected by Japan had been regarded as that of western barbarian at that time in Joseon. Accordingly, it seems reasonable that before the introduction of western costume into Joseon dynasty, an open-door policy for the West had been a prior settlement for Joseon dynasty regardless of the details of Western-style Court Costume. And also, the pride of civilization of Joseon dynasty, which has been used to express Joseon dynasty's identity as Joseon-centrism, had to be converted before the open-door policy. Ultimately,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 reception of the Western-style Court Costume had been raised as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problems in the circumstances when the submissive relationship in the traditional Eastern- Asia had been forced to be converted to modern sovereign international relationship.

Key words: The problems receiving the new styled credential, Western-style court costume, Joseon dynasty, Japan; 서계(書契) 접수 문제, 서구식 대례복 제도, 조선, 일본

I. 서 론

지금까지 근대 복식사의 서두는 '개항→외국 파견'

[†]Corresponding author

E-mail: evangeline@hanmail.net

외교관의 양복 경험→복제 개혁으로 기존 복식의 간 소화→양복의 전면적 도입'이라는 도식화적 구도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복식사는 기존 복식과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을 근저에 두고 새롭게 소개되는 복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의 인과관계 속에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새롭게 소개되는 복식의 내용에 따라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착용하는지가 달라지므로 복식이 지난 함의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계기를 정치 외교적 사건으로서 ‘개항’으로, 처음 소개된 복식을 ‘양복’이라는 보통명사로 통칭하여 설명할 때 복식사적 측면에서 초기 도입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력을 획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조선 사회에 서양 복식이 언제 처음 소개되었으며 이 때 복식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조선인 최초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발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접학문분야인 역사학과 외교사학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조선에서 최초이면서 공식적으로 서양 복식을 인식하고 경험하였다고 여겨지는 개항 직전 서계 접수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 때 소개된 서양 복식은 1872년(明治5) 일본에서 제정된 문관대례복 제도의 서구식 예복이다. 본 연구에서 서구식 대례복 제도는 1872년(明治5) 예복 제도를 말하며, 당시 제정된 예복은 대례복과 통상예복을 포함한다. 대례복은 산형 모자[bicorn], 문양이 자수된 연미복형 상의, 조끼, 하의, 패검을 갖춘으로써 일습을 이루고 통상예복은 일반적인 실크햇(silk hat)과 연미복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통적인 복식 체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대례복은 국가 상징 문양을 금사로 자수함으로써 독립된 주권 국가의 정체성을 강조한 근대적 개념의 복식이다(이경미, 2008).

본 연구는 서계 문제로 인하여 일본과 조선이 교섭하는 과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서구식 대례복 제도가 전면적으로 부각되는 ‘연향절차 논의’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통해 서구식 대례복 제도에 대한 조선의 최초 시각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高宗實錄』을 고찰하고, 일본의 서구식 대례복 제도에 대하여 『法令全書』를 조사하였으며, 그 외 『通文館志』 및 『朝鮮交際錄』 등의 외교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다.

II. 19세기말 서계 문제에 대한 사적 고찰

1. 서계 문제의 발단

조선후기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교린의 관계로 쓰시마[對馬島]를 경유하여 바쿠후[幕府]로 연결되었

고, 대마도는 조선이 수여한 도서(圖書), 즉 인장(印章)을 사용함으로써 조선으로부터 대마도로 이어지는 상하관계로 인식되어 왔다(김용구, 2001). 通文館志(1720/2006) 교린편에 ‘만력(萬曆) 기유년(己酉, 1609, 광해군1)에 약조를 정하였다.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는 관례가 없어지고, 일이 있으면 대마도의 왜인들이 관백(關白)의 뜻이라고 하여 대차왜(大差倭)를 정하여 보내었다. 상경하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상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부산관에 나아가 숙배하고 사례하게 하며 연향을 베풀어 음식을 접대하고 서계를 수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때 주고받는 외교문서를 서계(書契)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규정과 격식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2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던 1868년 일본에서 메이지이신(明治維新)이 일어나 정체에 변화가 생기가 되었다. 일본은 이를 조선에 알리고자 새로운 형식의 서계를 받아줄 수 있는지를 묻는 서계, 즉 선문서계(先問書契)를 보냈다. 龍湖閒錄(19세기)/1980에 수록되어 있는 서계에는 일본의 정권이 일소(一掃)하여 황실에서 직접 통치함을 알리고, 쓰시마 번주의 명칭이 좌근위소장대마관평조신(左近衛少將對馬官平朝臣)으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의 국서에는 조선이 수여한 도서가 아닌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을 황실로 칭하는 문제와 쓰시마 도주의 명칭 변경 문제, 조선으로부터 받은 인장을 쓰지 않는 것은 기존의 교린 질서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형식이었다. 이에 서계를 받은 부산 훈도(訓導) 안동준은 서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다음해에는 조선 조정도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화하였다(고종6년 12월 13일 庚戌).

1871년(明治4) 8월 일본에서는 폐번치현(廢藩置縣)이 단행되어 대조선 업무를 쓰시마도주가 아닌 외무성에서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같은 해 일본은 서구식 대례복 제도를 공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복식 제도에 있어서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1872년 2월 22일 일본의 국체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서계를 다시 보내오게 되었고, 조선이 계속 반발하였지만 일본은 일방적으로 조선과의 외교 제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조치를 계속 취하였다(김수암, 2000).

새로운 형식의 서계 접수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과 일본간 교섭과정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서계문제의 전개와 결말

조 선	일 본
홍선대원군 집권 시기 서계의 형식과 내용에 의거하여 접수 거부 (고종실록 권6, 고종6년 12월 13일 庚戌)	1868년 明治維新 先問書契(황실, 새 인장, 대마도주 명칭 변경) (『龍湖閒錄』四, 1060) 對馬島主書契及大修大差倭平和節書契別幅贍本)
1873년 12월 고종 친정 1874 서계 접수로 정책 변경 (승정원일기, 고종11년 6월 29일 庚子)	1871년 滅藩置縣 조선문제를 외무성에서 담당함 1872년 서계를 다시 보냄
서계 접수는 보류하고 연향의식 제안 및 논의 (고종실록 권12, 고종12년 2월 5일 癸酉)	1875년 外務大臣 서계 (일본어로 작성, 외무성 도장, 황상, 대일본) (『龍湖閒錄』四, 1129 日本書契)
거부 (고종실록 권12, 고종12년 5월 10일 丙午)	서구식 예복 착용, 정문 출입 주장 (고종실록 권12, 고종12년 3월 4일 辛丑)
	협상 결렬 1875년 8월 운요호 사건 (고종실록 권12, 고종12년 8월 22일 丙戌)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 체결(고종실록 권13, 고종13년 2월 3일 乙丑)	

*()는 내용의 출전

2. 서계 문제의 전개와 결말

서계로 인해 조선과 일본이 갈등을 겪고 있던 시기인 1873년 12월 조선에서는 홍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고종은 서계접수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박규수와 함께 일본과의 서계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박규수는 ‘(일본이 보낸 서계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여 그 글을 물리치고 받지 않은 지 여러 해 되었다. 이대로 그냥 둔 채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어찌 협의하여 틈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서계의 접수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논의 끝에 조선 조정이 직접 서계 접수를 추진하게 되었다(고종11년 6월 29일 庚子). 이로부터 1874년 8월 9일 새로 부임한 훈도 현석운(玄昔運), 별차 현제순(玄濟舜)과 일본 외무성 직원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부산에서 회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이 최초로 직접 일본의 외무성 관리를 접견한 것이다(김용구, 2001). 이 자리에서 조선이 먼저 서계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사신을 청해서 오게 하는 것을 결정하였다(고종11년, 8월 9일 己卯).

1875년 2월 24일 모리야마가 일본 외무대승이 조선 예조참판에게 보내는 새로운 서계를 지참하고 화

륜선을 타고 다시 부산에 도착하였다. 이때의 서계 역시 원문은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외무성 도장을 찍었으며 ‘대일본(大日本)’, ‘황상(皇上)’의 자구가 그대로 있었다(김용구, 2001). 이에 훈도 현석운은 화륜선을 타고 온 점, 일본어로 작성된 점, 황상의 ‘황(皇)’, 대일본의 ‘대(大)’ 등을 쓴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龍湖閒錄』四, 日本書契) 조선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지만, 교령을 위해 먼 길을 건너온 점을 생각하여 연향을 베풀어 위로하고 한문 번역본을 받아보고 규례에 어긋난 부분을 고쳐 받기로 하였다(고종12년 2월 5일 癸酉). 이와 같이 새로운 형식의 서계 접수에 대한 것은 설득하여 다시 받는 것으로 하고 연향을 베풀려는 과정에서 서구식 예복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래부사가 먼 바닷길을 건너온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연향을 베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일본측은 ‘서구식 예복’을 입고 ‘정문 출입’을 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동래부사는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조선 조정에 문의를 하게 된다. 조선 조정에서는 1875년 2월에 일본 사람들에게 연회를 차려주는 문제와 서계의 격식이 어긋나면 돌려주는 문제, 새 인장을 사용하는 문제, 통행증명서의 격

식을 고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연이어 회답보고를 올리고 규례에 어긋나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격식을 어긴 것은 돌려주게 하는 회답을 보내고, 수고롭게 멀리 바다를 건너와 교린의 우호를 닦은 테 대해 별도로 연향을 베풀어 주라고 누차 지시하였다(고종12년 2월 5일 癸酉, 2월 9일 丁丑). 1875년 3월 5일 의정부의 보고에서 바뀐 복식을 착용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동래부사 황정연이 올린 장계 중 ‘일본인들이 음식을 차려주는 날에 여러 가지 의식절차를 미리 의논하여 결정하자고 하는데 의상을 바꾸어 착용하겠다는 등 이전의 규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토의하던 중 왜관 밖으로 뛰쳐나오겠다고 위협할 모의를 하고 있으니 뒷날의 폐단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장 음식을 차려주기에 곤란한 점이 있어 표당에 문의하여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반 문제는 옛 규례대로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지시하기를 청하여 고종이 이를 승인하고 있다(고종12년 3월 4일 辛丑). 또한 5월 10일에는 현임 및 전임 대신들, 의정부 당상관들을 불러 서계 접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날 회의에서 판부사(判府事) 박규수는 ‘일본이 계속 거절당한 데 대해 감정을 가질 것’을 우려하고 서계 접수에 찬성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좌의정 이최옹(李最應)은 ‘서계를 외무성에서 보낸 것, 칭호를 마음대로 높여서 쓴 것, 연회의식 절차를 모두 바꾼 것’으로 인해 접수할 수 없다고 하였고, 우의정 김병국(金炳國)은 ‘서계에 사용되는 글자가 전례에 비교할 바 없이 다른 점, 특별히 연회를 차려주고자 하는데 의복 출입 문제를 야기 시켜 일을 지연시키는 점’ 등을 들어 이 날 회의는 서계를 접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되었고 조정에서는 따로 일에 능숙한 역관을 동래로 내려 보내어 바로 잡게 하였다(고종12년 5월 10일 丙午). 이 때 파견한 역관이 모리야마를 만나서 ‘이웃나라와의 모든 규례는 토의 결정한 옛 규례를 따라야 한다’고 타일렀다. 이에 대해 모리야마는 ‘파견관이 귀 조정의 파견관인 이상 예의의 도리로 볼 때 예복 차림으로 서로 만나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역관은 ‘예복 차림으로는 만날 수 없으며 서계도 볼 수 없다’고 하여 회담은 결렬되고 만다(고종12년 7월 9일 癸卯).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계속해서 서구식 예복 문제와 정문 출입 문제로 일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여 동래부사를 잘 타일러서 일본측이 우선 문건을 고쳐 오도록 몇 차례 더 지시하였다(고종12년 8월 2일 丙寅, 8월 6일 庚午).

일본 조정에도 ‘조선국 정부가 작년 가을 일본과의 수호 사건을 담당하여 노력하였던 대신을 면직시키고 일본 서계의 국문체[日文體]를 한문체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황, 칙의 문자를 이용하고, 일본에 대자(大字)를 붙이는 것을 바꾸어 달라고 하며, 부사를 만날 때 새로 제정한 예복을 착용하고 정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구례(舊例)에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다. 옛 관례에 의거하지 않는 것은 복색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두 응낙하지 않는다고 확답함으로써 회견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었다(明治天皇紀, 明治8년 6월 24일조에 첨가됨).

서구식 대례복 착용 및 일본의 행례 절차 변경 요구와 조선의 거부가 팽팽하게 계속 맞서 이어짐으로써 결국 정상적인 교섭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이 사관이 부산을 떠나 귀국하는 당일 강화도에서 운요호[雲揚號]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고종12년 8월 22일 丙戌) 결국 조선은 무력적인 개항에 직면하게 된다. 강화도에서 일어난 운요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루어진 회담의 결과로 병자년 2월 강화도조약이 맺어지게 된다(고종13년 2월 3일 乙丑). 이는 1856년 일본과 미국 간에 맺어진 조약 상황과도 같은데 일본은 조선 스스로 개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무시하고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 체결에서 배운 방법을 조선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첨예한 문제로 작용한 서구식 예복은 조선의 정체성과 동일시되어 온 의관문물에 대한 자부심이 처음으로 문제시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개항으로 인해 조선이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여야 하고 그 변화가 의관문물로부터 시작됨을 의미한 것이라 반대로 조선의 의관문물이 조선의 정체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III. 서계 문제 당시 일본의 서구식 대례복 제도 고찰

1. 서구식 대례복 제도의 내용과 착용일

일본은 1872년(明治5) 11월 12일 태정관(太政官) 제339호로 문관 대례복과 통상예복을 정하였다.

금번 勅奏判관원 및 非役有位 대례복과 상하 일반 통상의 예복을 별책 복장 도식과 같이 정한다. 이전의 衣冠으로써 祭服으로 삼고 直垂, 狩衣, 上下 등은 모두 폐지한다. 단 新制의 예복을 마련하지 못하는 동안은 예복 착용의 때에 당분간 直垂, 上下를 입는다(法令全書 明治5년 태정관 339호).

『法令全書』의 복장도식에서는 칙임관, 주임관, 판임관의 관등에 따라 대례복의 모자, 상의, 하의(조끼), 바지를 규정하고 있다. <표 2>에서 칙임관의 대례복 예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재료는 검은색 양모직물[黑羅紗]로 모자의 측면, 상의의 전면 등에 칙임관은 오칠동(五七桐)을 문양화하여 금사로 자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하 일반의 통상예복은 <표 2>에서와 같이 실크햇과 연미복으로 정해졌다. 이어서 11월 29일에는 태정관 373호를 통해 대례복 착용일을 발표하였다.

대례복 착용일

신년조배(新年朝拜) 원시제(元始祭) 신년연회(新年宴會)
이세양궁에제(伊勢兩宮例祭) 신무천황즉위일(神武天皇即位日)
신무천황예제(神武天皇例祭) 효명천황예제(孝明天皇例祭)
천장절(天長節) 외국공사참조절(外國公使參朝の節)
(法令全書 明治5년 태정관 373호)

대례복 착용일로 제정된 날은 신년조배, 원시제, 신년연회, 천장절 등 조하(朝賀)와 관련된 행사와 일본 건국과 관련된 예제, 메이지천황의 선왕인 효명천황예제 등과 같이 왕실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할 때가 대부분이고 외국 공사가 참조할 때 착용하는 것이 외교와 관련된 것이다.

2. 행례 절차의 변화

일본은 1875년(明治8) 2월 9일 태정관 제18호로 문관 대례복을 착용할 때의 행례로써 경례식(敬禮式)을

제정하고 발표하였다(『法令全書』 1875년 2월 9일). 이에 대하여 1881년 조사시찰단의 조사(朝士)로 일본을 다녀온 강문형(1881/1999)은 『閨見事件』에서 ‘백관은 예복을 입고 장검을 폐용하고 세 번의 국궁을 하는데 끊어앉아 예를 표하는 절은 없이 대포 일백일성을 쏘아서 이를 예로 한다고 칭한다’고 서술하였는데 복장의 변화뿐만 아니라 절하는 풍습의 변화는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화로 인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은 대례복 착용 시의 최경례로 규정된 경례식으로, 경절, 천황 배알 시, 제사 참배 시에 행하도록 규정되었다. 모자의 착용 여부에 따라 경례 모습이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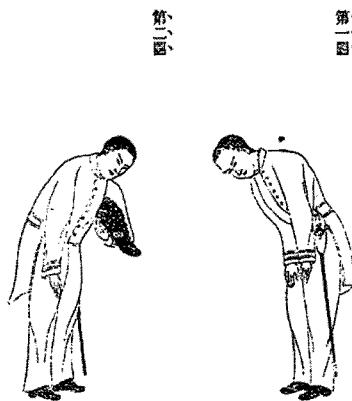
이상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연향절차의 논의라는 문제를 두고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던 1875년 당시 일본은 서양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주권 국가 간에 통용되던 서구식 대례복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와 함께 행례 절차의 변화로써 경례식을 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예법이 아닌 서양의 예법을 따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1875년 서계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질 때 일본의 서구식 예법과 조선의 전통식 예법이 충돌하게 된 것이다.

조선측에서 베푸는 연향에 일본측 대표인 모리야마는 서구식 예복을 착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原田環(1997)은 이 예복을 대례복으로 보았는데 조선과 일본의 국가간 외교적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대례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 『明治天皇紀』에는 ‘新制의

<표 2> 1872년(明治5) 일본 칙임관 대례복과 상하 일반 통상예복

모 자	상 의	하의(조끼)	바 지
칙임관 대례복			
상하 일반 통상 예복			

자료출처: 『法令全書』 明治5年 太政官第339號 大禮服制表并圖



<그림 1> 最敬禮

자료출처: 『法令全書』 태정관 제18호 1875년 2월 9일

禮服制’로 기록되어 있고,(明治天皇紀, 明治8년 6월 24일조에 첨가됨) 『朝鮮交際錄』에는 ‘我大小禮服’으로 언급하고 있으며(『朝鮮交際錄』60호), 『朴珪壽全集』에는 ‘洋服’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는 대례복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식 예복 제도에 대한 조선과 일본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서양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대례복과 통상예복을 구별하여 착용하는 복식 제도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과의 외교적 상황에서 서양 중심적 근대 국가 개념이 내포된 복식으로서 서구식 예복을 착용하고자 한 것인데 비하여, 조선은 교린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베푸는 연향의식이라는 측면에서 舊例의 복식을 착용하지 않는 이상 모두 서양인의 옷, 즉 양복으로 인식한 것이다.

IV. 개항 직전 서구식 대례복 제도에 대한 조선의 최초 시각에 대한 고찰

通文館志(1720/2006) 交隣上의 宴享儀에는 일본의 복색(服色)에 대하여 ‘복색은 그들에게 서로 억압하려는 뜻이 없기 때문에 그 때에 착용하는 바에 따라서 절대한다. 壬申년(1632, 인조10)에 법식으로 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이 교린 관계인 일본의 복색에 대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착용하든 개의치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전통적으로 조선과 일본이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복식의 보편성을 공유한 가운데 각 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

였다. 그러나 조선은 개항 직전 서계 문제 당시의 서구식 예복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당시 새롭게 부각해 온 서양인의 복식으로서 서구식 예복 제도에 대한 조선의 시각이 더해져서 생긴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 서구식 대례복에 대한 최초의 시각이 어떠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대한정책관계집찬(對韓政策關係雜纂) 『朝鮮交際錄』의 57호, 58호, 59호, 60호, 61호, 64호의 훈도 현석 운과 모리야마 간 논쟁에서 예복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朝鮮交際錄』은 일본 외교사료관 소장본으로, 서울대학교 고문헌자료실 소장의 『朝鮮交際始末』에는 같은 내용으로 ‘號數’ 없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내용을 간략화한 <표 3>을 중심으로 볼 때, 일본 측이 서구식 예복을 착용하고 그에 따라 행례 절차를 바꾸고자 하는 것은 연향의식의 형식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조선의 입장에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구식 예복에 대한 조선의 입장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전통적인 조선 복식에 대한 자부심이다. 이는 ‘성왕의 예복은 上衣下裳의 제도가 있어서… 옛적의 의복은 300년도 더 되었고 이 옷은 禮敬을 이루는 것이거늘 전후의 가불가가 어찌 있겠는가’라는 조선족 대표의 대응에서 확인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상, 의관(衣裳, 衣冠)’의 함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조선에서 의관문물의 중요성은 조선과 거의 동일시되었다. 특히 조선의 의관문물(衣冠文物)은 조선후기의 조선중화주의와 결부되어 조선만이 유일한 중화문화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의 표상으로 인식되었다(이경미, 2008; 정옥자, 1998). 따라서 당시 유교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이는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복장 문제 정도로 치부될 사항이 아니라 조선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서계 문제 당시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서양 예복 제도 수용에 대한 반감은 개항이 이루어진 이후에 최초로 외국에서 서양 예복을 경험한 바 있는 일본으로 파견된 수신사, 조사시찰단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이경미, 2009), 이후 조선에서 의제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개입되어 정치적, 외교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조선인에게 의관문물이 중요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1875년 조선 訓導 玄昔運과 일본 理事官 森山茂의 논쟁

조선 訓導 玄昔運	일본 理事官 森山茂
57호, 乙亥 4월 초5일 客使의 의복 變改와 정문 출입, 本官이 영접하고 좌석이 서로 가까운 것은 전례가 없다.	58호 明治8년 5월 14일 무릇 (의관)제도문물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정문 출입은 대 일본국의 관례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일본국의 명분과 관련된 것으로 양보할 수 없다.
59호, 乙亥 4월 12일 300년 서로 접해 있는 땅인데, 의제를 훌연히 바꾸니 우리의 놀라고 괴이함은 의문이 아니겠는가. 인정은 같을텐데 하물며 의제가 닳아 있으면 우리 쪽에서 배척하겠는가. 객사의 의복은 다른 나라와 같다...고로 그 의제를 배척한다.... 무릇 옛 성 왕의 예복은 상의하상의 제도가 있어서... 객사가 진실로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어찌 이를 취하지 않고 저쪽 편을 취한 것인가. 옛적의 의복은 300년도 더 되었고 이 옷은 예경을 이루는 것이거늘 전후의 기불가가 어찌 있겠는가.	60호 明治8년 5월 17일 의제개혁에 대해서 이미 전년 가을(1874년)에 복제 도식을 전 달했지만 아무 답이 없었다. 지금 수개월이 지나고 의제가 훌연히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놀랍고 괴이하다... 일본의大小禮服은 上古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오늘날 그 의제를 배척함은 일본을 배척하는 것이다.
61호 乙亥 4월 14일 일본의 근래 의복은 옛적의 의복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따른 것이다.	
64호 乙亥 5월 21일 서로 접대의절을 행할 때 귀국의 복색이 옛것과 다른 것으로 인해 시행이 불가하다.	

*당시 조선은 음력을, 일본은 양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일본이 새롭게 받아들인 예복을 ‘다른 나라, 저쪽 편’의 의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서양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개항 직전 조선의 대서양 정책을 통해 조선이 서양인의 옷, 즉 양복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은 서양세력의 계속적인 도전으로 인해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를 겪었으며 특히 남연군묘 도굴 시도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홍선대원군은 전국에 척화비를 세워서 ‘서양 오랑캐가 침범할 때 싸우지 않고 화평하려 한다면 나라를 파는 것과 같다’는 것을 국가 시책으로 삼았다(고종8년 4월 25일 甲申). 종화사상을 근거로 하여 서양을 ‘양이(洋夷)’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서양이 양이인 이상 양복은 ‘양이의 복식’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당시 양이로 여겼던 서양인들의 복식인 양복에 대한 반감이 먼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복을 착용하고 새로운 관계맺음을 요구하는 일본 역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세계 문제 이후 조선에서는 일본이 양이(洋夷)와 한 통속이라는 ‘왜양일체(倭洋一體)’ 개념이 확산되게 되는데 그 매개체로 작용한 것은 바로 양복(대례복)과 화륜선이었다(김수암, 2003)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이 일본의 서구식 예복 수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서양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일본 측에서는 서구식 예복에 대해 ‘(의관)문물제도

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인데 ‘현행의大小禮服은 上古의 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1871년(明治4) 시행된 일본의 ‘散髮廢刀令’과 함께 내려진 메이지 천황의 ‘服制一新에 관한 조칙’의 내용과 같다(明治編年史, 明治4년 4월 9일). 일본에서도 유교 의식이 투철한 이들에 의해 존왕양이(尊王攘夷) 운동이 있기는 했지만 조선보다는 유교의 토착화 정도가 깊지 않았다는 점, 서양 문물에 대한 기호와 호기심이 이전 시기부터 있어 왔다는 점, 메이지 정부에 의한 서양화 개혁이 절저히 진행되면서 양복의 형태가 일본의 오래된 전통에 부합됨을 강조한 점 등에 의해 서구식 대례복 제도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었고(이경미, 1999), 조선과 교섭할 당시에는 이미 법적인 측면에서 서구식 예복을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바뀐 복제와 행례 절차를 고수하여 자국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에 대해서 ‘일본의 예복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일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양복 착용의 거부는 메이지 이신(明治維新)에 대한 거부이고 이는 일본국의 명분과 관련이 있다고 여겼다.

이와 같이 조선과 일본 양측에 있어 복식 제도는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었고 자국의 입장은 고수함으로써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못했던 것으로 생

각된다. 조선이 7, 8년에 걸쳐 받아들일 수 없었던 서계의 내용과 형식까지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다시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하고 먼 바닷길을 건너온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할 예정이었던 연향예식은 서구식 예복 착용 문제로 인해 결국 결렬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일본측에 있어서 이전까지 있어왔던 조선과의 교린 관계와 일본 내에서 복제개혁을 단행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복장 문제에 대한 조선의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의 거부반응을 예상하고 무력으로 조선을 개항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염두에 두고 억지를 부린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태진(2000)은 1875년 국교수립 마지막 절차에서 일본측이 복제문제로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조선의 개방주의로 협상이 그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조선 스스로 개방을 취하여 정상적 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무력 위협으로서 운요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原田環(1997)도 모리야마가 양복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양복 착용을 국가의 명분으로까지 생각하여, 막다른 곳으로 치닫게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선 내에 서계 접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여 조선 내부의 정치적 대립을 이용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내었다고 보았다. 이를 견해는 일본이 서구식 예복 문제를 외교적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표 3>의 문서 60호에 의거하면 1874년 가을에 일본의 대례복 도식이 조선에 전달된 것을 알 수 있지만, 일본이 도입한 서구식 예복 제도를 조사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여겨지고 1875년까지도 조선에서는 일본이 제정한 서구식 예복 제도에 대해 계속 꾀이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개항 직전 조선과 일본간에 갈등으로 작용하였던 ‘서계(書契) 접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조선에 최초로 소개된 양복과 이에 대한 조선의 초기 시각에 대해 논함으로써 19세기 개항 이후 조선에서 이루어진 의제개혁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高宗實錄』

을 고찰하였고, 일본의 서구식 대례복 제도에 대하여 『法令全書』를 조사하였으며, 그 외 『通文館志』 및 『朝鮮交際錄』 등의 외교 관련 문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항 직전 일본이 보내온 새로운 형식의 서계를 접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에 양복 문제가 공식적으로 생겨화 되었는데 조선에 최초로 소개된 양복은 일본에서 받아들인 서구식 예복이었다.

둘째, 일본은 1872년 문관대례복 제도를 제정함으로써 서구식 예복을 제도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1875년에는 새로운 행례 절차인 경례식을 제정하였다.

셋째, 조선은 일본의 서구식 예복 착용 주장에 대하여 수용불가를 주장하였다. 조선은 오랫동안 교린 관계였던 일본의 복식에 대해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개항 직전의 조선에 있어서 일본이 새롭게 받아들인 서구식 대례복은 국경을 넘보는 ‘양이(洋夷)’의 복식으로 여겨졌으므로 이를 일관되게 거부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에 양복이 도입 혹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식 양식적 문제를 떠나 서양에 대한 문호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조선의 정체성을 담보해 온 의관문물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뛰어넘는 세계관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가 관계로서 사대교린 체제가 근대 국가 관계인 외교 체제로 변화되어야 할 상황에서 서구식 대례복 제도의 채택은 새로운 정치 외교적 생점으로 부각되고 있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국역 高宗純宗實錄. (1998).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자료검색일 2008. 4. 10~12, 자료출처 <http://www.koreanhistory.or.kr/>
- 국역 承政院日記. (번역 중). 한국고전번역원. 자료검색일 2008. 4. 11, 자료출처 [http://www\[minchu.or.kr/index.jsp?bizName=MS](http://www[minchu.or.kr/index.jsp?bizName=MS)
- 김수암. (2003). 1870년대 조선의 대일관: 교린질서와 만국공법질서의 충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1), 5~29.
- 김용구. (2001).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1866~1882.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부산근대역사관. (2005). 근대외교의 발자취. 부산: 영신애드.
- 이경미. (1999). 19세기 개항 이후 한일 복식제도 비교.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미. (2008). 대한제국의 서구식 대례복 폐려다임. 서울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경미. (2009). 갑신의제개혁(1884년) 이전 일본 과천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의 복식 및 복식관. *한국의류학회지*, 33(1), 45-54.
- 이태진. (2000). 고종시대의 재조명. 서울: 태학사.
-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서울: 일지사.
- 龍湖閣錄 4. (19세기). 국사편찬위원회 편 (1980).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영인.
- 姜文馨. (1881). 日本闖見事件. 허동현 (1999). 朝士視察團關係 資料集 12. 서울: 國學資料院 영인.
- 對韓政策關係雜纂 朝鮮交際錄. (연도미상). 日本 東京 外交史料館 소장본.
- 法令全書. (1912). 東京: 內閣印刷局.
- 明治天皇紀. (1969). 東京: (株)吉川弘文館.
- 朴珪壽. (연도미상). 朴珪壽全集上, 下.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978). 서울: 亞細亞文化社 영인.
- 新聞集成明治編年史. (1934~1936). 東京: 東洋印刷株式會社.
- 與義制 編述. (1930). 朝鮮交際始末.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 原田環. (1997). 朝鮮の開國と近代化. 広島: 溪水社.
- 通文館志 上. (1720).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편 (2006). 서울: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영인.